

#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

사업명

온오프라인 융합(O2O) 개발인력 양성사업

**제1조(목적)**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(이하 '갑'이라 한다.)과 강남구청(이하 '을'이라 한다.) 및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하 '병'이라 한다.) 간에 「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」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.

**제2조(지원기간)** ①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016. 12. 31.까지로 한다.

**제3조(당사자의 의무)** ① '갑'은 '을' 및 '병'이 「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'을'과 '병'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'을'과 '병'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, '갑'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·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사업비의 지원)** ① '갑'은 '을'의 요청에 따라 「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」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(이하 「보조금」이라 한다.) 119,000천원을 지원하며 '을'은 자치단체 부담금 51,000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.

② 보조금은 '을'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③ '을'은 보조금을 받은 즉시 '병'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.

**제5조(보조금의 사용 등)** '을'과 '병'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**제6조(보조금의 관리)** ① '병'은 보조금을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
② '을'과 '병'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,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업내용 등의 변경)** '을'과 '병'은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(항목간 변경, 항목사업비 20%를 초과하는 항목 내 세항목간 변경)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8조(지원의 취소)** '을'과 '병'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'갑'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9조(중도해지 등의 통보)** '을'과 '병'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'갑'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)**

① '을'과 '병'은 '갑'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'을'과 '병'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·폐지하거나,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'을'과 '병'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'갑'은 이를 환수한다.

④ '을'과 '병'은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,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'갑'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한다.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.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, 다만,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.



⑤ 부정수급한 사업에 대해 약정해지하고, 부정수급한 기관은 약정해지일로 부터 2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.

**제11조(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)** ① '병'은 '갑'과 '을'에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'을'과 '병'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'갑'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제재)** '을'과 '병'이 「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.

**제13조(점검·평가)** ① '갑'은 '을'과 '병'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,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'을'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'갑'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, 지도·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을'과 '병'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보고의무)** ① '을'과 '병'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(사업내용 변경, 예산항목간 변경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'갑'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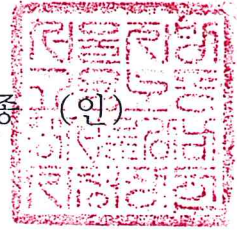
② '병'은 '갑'과 '을'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준용)**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회계예규,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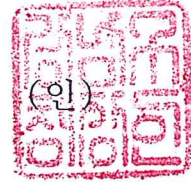
본 약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'갑'과 '을'과 '병'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2월 29일

(갑)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노명중 (인)



(을) 강남구청장 신연희 (인)



(병)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규대 (인)

